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6년 2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임계리사 윤 기 수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

1. 보험종목 및 명칭

구 분	연금지급형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범위
(무)하나트리플 적립연금보험	종신연금(10년보증, 20년보증)형[정액, 체증(5·10%)]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7·10·15·20년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 개인연금형 : 45 ~ 75 세 -. 부부연금형 : 48 ~ 75 세	◎ 종신 -. 제 1 보험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 2 보험기간 제 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단,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단,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 후 납입기간 경과 이후에 한함.

또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3.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45 세~54 세형	5,7,10,15,20 년납, 전기납
55 세~59 세형	5,7,10,15,20 년납, 55 세납, 전기납
60 세~75 세형	5,7,10,15,20 년납, 55,60 세납, 전기납

4.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45~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5 세
5 년납	15~(Y-11)세	15~(Y-12)세	15~(Y-14)세	15~(Y-17)세	15~(Y-23)세
7 년납	15~(Y-10)세	15~(Y-10)세	15~(Y-11)세	15~(Y-13)세	15~(Y-17)세
10 년납	15~(Y-10)세	15~(Y-10)세	15~(Y-11)세	15~(Y-12)세	15~(Y-14)세
15, 20 년납	15~(Y-납기)세	15~(Y-납기)세	15~(Y-납기)세	15~(Y-납기)세	15~(Y-납기)세
55 세납	-	15~45 세	15~49 세	15~50 세	15~50 세
60 세납	-	-	15~50 세	15~53 세	15~54 세
전기납	15~(Y-10)세	15~(Y-10)세	15~(Y-11)세	15~(Y-12)세	15~(Y-14)세

Y: 연금지급개시나이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월 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 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2)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계약 변경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3) 추가납입보험료

제 1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4) 납입조정기간(횟수)

보험계약일부터 2 년이 경과한 이후 보험료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조정제도에 의해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로 한 기간(횟수)를 말한다.

나. 납입보험료 한도

(1) 기본보험료

1 구좌당 월 20 만원 ~ 100 만원

(2) 추가납입보험료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한다. 단, 납입조정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6.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납입조정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뺀 금액기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한다.

7. 보험료납입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 가. 보험계약일부터 만 2년이 경과된 이후 계약자가 보험료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보험료납입조정신청서로 보험료납입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조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납입조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기본보험료 및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한다.
- 나. 납입조정기간(횟수)은 납입조정시점부터 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뺀 금액 기준)이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납입조정 1회 신청당 12회를 최고한도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 중 신청할 수 있는 총 납입조정 횟수는 최대 5회로 한다.
- 다. 납입조정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조정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 계약해당일에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납입한다. 단, 납입조정기간 중 회사가 정한 납입조정기간(횟수)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료 납입신청서로 보험료 납입을 신청한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9.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text{월납보험료} \times 12 \times \min\{\text{보험료납입기간}, 10\}$$

10.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 / 2$$

-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times 100$$

- I: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 E: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 A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

A₆: 산출시점 직전 6 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A₀: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외부지표 산출식 = $(B_1 + B_2 + B_3)/3$

- B₁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 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₂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 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₃ : 1 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 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_i(-3) : 산출시점 직전 3 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 산출시점 직전 2 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 산출시점 직전 1 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 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 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AA-) 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기준 상위 5 개은행의 15 일자 1 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자율을 산술평 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 개 은행을 정한다.

-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 일자 정기예금이자율, 각월의 직전 1 월의 16 일부터 각월의 당월 15 일 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자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 공시기준이자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라. ‘나’항의 공시이자율은 동종상품(‘나’항에 따라 공시이자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자율보다 높 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 회 이상 공시이자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바. 공시이자율은 보험 가입 후 10 년 이내에는 연 복리 2.5%, 10 년 경과 후에는 연 복리 2.0%를 최저한도 로 적용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아. 3년 미만 경과 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70%, 2.5%)
2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80%, 2.5%)
3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90%, 2.5%)

11.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12. 부가하는 특약

무배당정기특약,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 무배당입원특약Ⅲ, 무배당암보장특약Ⅱ, 무배당중신입원특약, 무배당중신사망보장특약, 무배당치매간병특약

13. 기타

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25% 를 초과 할 수 없다.
- (2) 제(1)호에 따라 적립액을 인출시 중도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 이 내로 한다.
- (3)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 (4)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액을 인출할 수 없다.
- (5) 납입조정기간 중 중도인출을 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 당시의 해약환급금에서 잔여 납입조정기간 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약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적립하며,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마.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사.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0.5%를, 매월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아.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감독규정 제 4-14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신계약비율 최고한도를 적용한 신계약비」의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 (2)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부활(효력회복)계약 청약서의 서식